

# 2026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3차 기간제 근로자(휴직대체인력) 채용공고

농수산물산업 강국 실현으로 국민의 행복을 더하는 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함께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6월 17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 1. 채용개요

채용분야(직무·부서)	채용인원	근무 기간	근무지	
일반 행정 지원	식량관리처	1명	'26. 7. 23. ~ '27. 7. 22. (12개월)	나주(본사)
	해외사업처	1명	'26. 7. 23. ~ '27. 4. 7. (8개월 16일)	
	유통조성처	1명	'26. 8. 27. ~ '27. 8. 9. (11개월 14일)	
	온라인도매시장운영본부	1명	'26. 7. 23. ~ '27. 10. 1. (14개월 9일)	나주(사업소)
	광주전남지역본부	1명	'26. 7. 23. ~ '27. 11. 1. (15개월 10일)	광주(광주전남지역본부)
	대구경북지역본부	1명	'26. 7. 23. ~ '27. 8. 5. (12개월 14일)	대구(대구경북지역본부)
합 계	6명	-	-	

\* 근무 시작일자 및 근무 부서·담당업무는 기관 운영 여건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전형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가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 휴직자 등의 신분 사항 변동에 따라 근무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2. 근무조건

고용형태	기간제 근로자 * 근무(계약)기간은 채용개요 참고	
근로시간	1일 8시간(9~18시), 주 5일(월~금) 40시간 근무	
연봉	30,578천원(월 급여액 : 2,548,160원)	
성과급	성과연도 월기본연봉 기준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일할계산 지급	
근무지	나주	(본사)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사업소)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27
	광주	(aT광주전남역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84, 1층
	대구	(aT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1, 18층

### 3.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 지원자격

\* 모집부문별 중복지원 불가

자격 구분		내 용
공통 자격요건	기본자격	○ 성별, 학력, 전공, 경력 등 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공사 채용절차 수행 가능한 자
	연 령	○ 임용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60세) 미만인 자
	기 타	○ 공사 인사규정 제7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부정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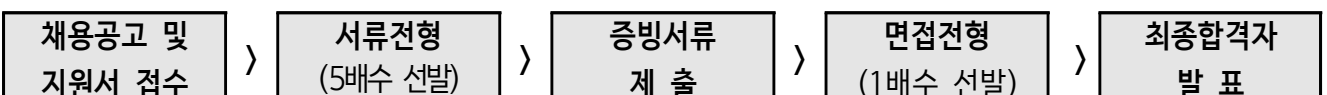
#### □ 우대사항

우대대상	적용전형		우대사항 (만점기준)	부여기준
	서류	면접		
장애인	중증	○ ○	15%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경증	○ ○	10% 가점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	○	5% 또는 10% 가점	관련 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		10% 가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저소득층(본인/자녀)	○		5% 가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본인/자녀)
북한이탈주민(본인/자녀)	○		5% 가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본인/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		5% 가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		5% 가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경력단절여성(1년 이상)	○		5% 가점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1년 이상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 여성으로 배우자 또는 자녀가 존재하고, 접수마감일 기준 직장이력이 1년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자립준비청년	○		5% 가점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

\* 우대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 가장 유리한 것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분야에 대해서만 적용(전형별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 미부여)

### 4. 채용절차



## 5. 채용일정

구분	세부 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지원서접수	'26. 6. 17.(수) ~ 7. 2.(목) 18시	14일 이상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6. 7. 9.(목)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증빙서류 제출	~ '26. 7. 13.(월) 14시	
면접전형	'26. 7. 14.(화) ~ 7. 15.(수) 중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최종합격자 발표	'26. 7. 16.(목)	
인사발령 및 부서배치	'26. 7. 23.(목) ~	채용분야별 상이

- \* 전형별 합격자 발표 및 배치 일정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최종합격자 발표 시 안내되는 기한 내 임용정보 미제출 시 합격 취소됨

## 6. 지원서 접수 기간 및 접수 방법

- 접수기간 : '26. 6. 17.(수) ~ 7. 2.(목) 18시 00분
- 접수방법 : 공사 채용 홈페이지(atrecruitment.recruiter.co.kr)를 통해 제출
- 유의사항
  - 지원서는 최종 제출 이후 수정 불가능
  - 자격요건 등의 적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사지원서 상 기재 착오·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7. 채용 전형별 세부 내용

구분	세부 내용
서류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li> <li>○ 평가내용 : 공사 인재상 및 직무능력 기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평가</li> <li>○ 합격자 결정기준 : 최종평가점수(서류평가점수 + 가점) 고득점자 순</li> <li>○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전원 면접 응시기회 부여</li> <li>○ 과락 처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서류평가점수(가점 제외) 60점 미만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국가공직법 제31조에 따른 취업자원대상자의 경우 최종평가점수(서류평가점수+가점) 60점 미만인 경우 과락 차기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분야에 대해서만 가점 적용/서류평가점수 40점 미만인 경우 가점 미적용)</li> </ul> </li> <li>- 입사지원서 등 작성 불량*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성불량 : 자기소개서 질문 항목과 무관한 내용 또는 특수기호 반복 사용, 사명 오기재 (타사명 기재), 동일 작성 내용의 반복, 자기소개서 항목 1가지 이상 미기재</li> </ul> </li> </ul> </li> </ul>
면접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li> <li>○ 면접장소 : 비대면 화상면접</li> <li>○ 평가항목 : 직무적합성, 조직적응력, 태도 및 성품 등에 대한 종합평가</li> <li>○ 합격자 결정기준 : 최종평가점수(면접평가점수 + 가점) 고득점자 순</li> <li>○ 동점자 처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면접전형 평가요소 중요도 순 → 서류전형점수 순</li> </ul> </li> <li>○ 과락 처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평가점수(가점 제외)가 60점 미만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국가공직법 제31조에 따른 취업자원대상자의 경우 최종평가점수(면접평가점수+가점) 60점 미만인 경우 과락 차기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분야에 대해서만 가점 적용/면접평가점수 40점 미만인 경우 가점 미적용)</li> </ul> </li> <li>-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위·변조로 판명된 경우</li> </ul> </li> </ul>

## 8. 증빙서류 제출

- 제출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제출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 '26. 7. 13.(월) 14시 00분
- 제출방법 : e-mail 제출 / hrteam@at.or.kr

구 분		증빙서류
우대사항 해당자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등 불인정</li> <li>- 문서확인번호가 명시된 '정부24(www.gov.kr)'발급서류</li> </ul> </li> <li>○ 중증장애인인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 1부</li> </ul>
	취업지원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유공자증 불인정</li> <li>- 문서확인번호가 명시된 '정부24(www.gov.kr)'발급서류</li> </ul> </li> </ul>
	의사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상자 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법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li> </ul> </li> </ul>
	저소득층 (본인/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를 의미</li> <li>- 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li> <li>- 문서확인번호가 명시된 '정부24(www.gov.kr)'발급분</li> </ul> </li> </ul>
	북한이탈주민 (본인/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만 해당</li> <li>- 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li> <li>- 문서확인번호가 명시된 '정부24(www.gov.kr)'발급분</li> </ul> </li> </ul>
	다문화가족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 자녀 증빙서류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 또는 모 중 국적취득자 기본증명서(상세) 1부</li> <li>*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1부</li> <li>- 부모의 혼인관계 증명서 1부</li> <li>- 가족관계증명서 1부(자녀관계 확인용)</li> <li>- 문서확인번호가 명시된 '정부24(www.gov.kr)'발급분</li> </ul> </li> </ul>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한정</li> <li>- 문서확인번호가 명시된 '정부24(www.gov.kr)'발급분</li> </ul> </li> </ul>
	경력단절여성 (1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력단절여성 증빙서류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등본 1부(문서확인번호가 명시된 '정부24(www.gov.kr)'발급분)</li> <li>-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li> </ul> </li> </ul>
	자립준비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립수당수급자확인서 또는 보호종료 확인서 또는 보호시설 퇴소 확인서 등 자립준비청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발급</li> </ul> </li> </ul>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빙서류 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li> <li>○ 모든 증빙서류는 지원서 접수 마감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li> </ul>	

\* 증빙서류 미비자에 대해 1회에 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차 미비 시 지원서에 기재한 사항과 달라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전형결과와 상관없이 합격자 선발에서 제외

## 9.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입사 포기, 퇴사, 증빙서류가 허위 또는 위·변조로 판명된 경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최종합격자 인사발령일 6개월 이내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예비합격자(차순위자) 채용
  - 예비합격자 운영 기간 : ~ 2027. 1. 22.(금)
  - 예비합격자 운영 규모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면접전형 응시자 전원
- \* 단, 면접전형 과락대상자는 예비합격자에서 제외

## 10. 블라인드 채용 안내

- 입사지원서 상 사진, 성별, 나이, 학교명, 학점, 주소 등 기재란 없음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출신 지역, 성별 등) 일체 기재 금지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성명, 연락처, e-mail 등은 전형 시 블라인드 처리되며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11. 서류반환신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원본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구분	주요 내용
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이내
신청방법	채용담당자에게 별도로 신청
반환대상	제출된 채용 원본서류
반환제외대상	사이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 지원자가 공사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채용서류

## 12. 이의신청 안내

-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접수방법 : 사이트 내 Q&A 게시판 게시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시행

### ※ 이의 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 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채용결격사유 및 부정행위자 기준 안내

## □ 채용결격사유(인사규정 제7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따라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가 없이 기피중인 자와 군무이탈중인 자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10~11. (삭제)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및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주거나 채용공고문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1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3호 및 제6의4호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5.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부정행위자 기준(채용업무시행세칙 제16조)

- ①-1.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한 행위(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한 경우도 포함)
  2.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3.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4.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5.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6. 병역, 가점, 어학능력검정시험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사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